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협약 금융기관에 제2금융권을 추가하고, 특례보증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
-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추가(안 제2조제2호마목)
(신설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 완화(안 제5조제2항제1호 삭제)
(삭제) 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-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9조)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개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협약 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고,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,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정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 특례보증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할 경우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